

경인항 기점 컨테이너 육상운송 요율표

2014년 1월 1일 시행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컨테이너 육상운송운임 요금표

1. 모든 컨테이너 육상운임 요금(이하 "운임"이라고 한다)은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다만, 제 2항의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가. 경인항기점 왕복운임

(단위 : 원)

행선지	구분	인천터미널기점		김포터미널기점	
		20FT	40FT	20FT	40FT
서울1		212,000	236,000	167,000	185,000
서울2		242,000	269,000	190,000	211,000
부천시		178,000	198,000	176,000	195,000
시흥시		204,000	227,000	229,000	254,000
광명시		221,000	246,000	213,000	237,000
안양시		221,000	246,000	221,000	246,000
군포시		221,000	246,000	239,000	266,000
안산시		221,000	246,000	243,000	270,000
의왕시		221,000	246,000	237,000	263,000
수원시		337,000	374,000	329,000	365,000
과천시		235,000	261,000	253,000	281,000
성남시		348,000	387,000	341,000	379,000
용인시		399,000	443,000	385,000	428,000
김포시		235,000	261,000	-	-
인천광역시(강화군)		374,000	416,000	316,000	351,000
인천광역시(영종도)		257,000	286,000	312,000	347,000
고양시		235,000	261,000	185,000	206,000
파주시		337,000	374,000	282,000	313,000
구리시		346,000	384,000	298,000	331,000
의정부시		334,000	371,000	282,000	313,000
양주시		426,000	473,000	369,000	410,000
동두천시		426,000	473,000	370,000	411,000
하남시		365,000	406,000	357,000	397,000
화성시		432,000	480,000	424,000	471,000
오산시		440,000	489,000	426,000	473,000
평택시		450,000	500,000	433,000	481,000
안성시		468,000	520,000	455,000	506,000
남양주시		365,000	406,000	315,000	350,000
이천시		496,000	551,000	482,000	536,000
여주군		538,000	598,000	525,000	583,000
광주시		350,000	389,000	308,000	342,000
양평군		438,000	487,000	383,000	426,000
포천군		455,000	506,000	403,000	448,000
가평군		552,000	613,000	500,000	556,000

행선지	구분	인턴터미널기점		김포터미널기점	
		20FT	40FT	20FT	40FT
연천군		455,000	505,000	402,000	447,000
원주시		636,000	707,000	624,000	693,000
춘천시		591,000	657,000	546,000	607,000
홍천군		590,000	655,000	544,000	604,000
평창군		777,000	863,000	765,000	850,000
양양군		790,000	878,000	781,000	868,000
동해시		771,000	857,000	761,000	846,000
삼척시		771,000	857,000	762,000	847,000
태백시		770,000	855,000	761,000	846,000
영월군		756,000	840,000	744,000	827,000
진천군		600,000	667,000	587,000	652,000
음성군		716,000	796,000	700,000	778,000
청주시		616,000	684,000	600,000	667,000
청원군		696,000	773,000	682,000	758,000
괴산군		739,000	821,000	725,000	805,000
옥천군		692,000	769,000	681,000	757,000
영동군		777,000	863,000	765,000	850,000
금산군		768,000	853,000	756,000	840,000
충주시		742,000	824,000	726,000	807,000
천안시		522,000	580,000	509,000	565,000
대전광역시		727,000	808,000	680,000	756,000
아산시		548,000	609,000	536,000	595,000
예산군		598,000	664,000	590,000	656,000
서산시		685,000	761,000	677,000	752,000
당진군		580,000	644,000	572,000	635,000
태안군		734,000	815,000	725,000	806,000
홍성군		597,000	663,000	590,000	656,000
보령시		647,000	719,000	640,000	711,000
부여군		681,000	757,000	671,000	746,000
서천군		761,000	845,000	754,000	838,000
공주시		586,000	651,000	574,000	638,000
군산시		714,000	793,000	731,000	812,000
익산시		708,000	787,000	698,000	775,000
김제시		764,000	849,000	758,000	842,000
전주시		705,000	783,000	695,000	772,000
남원시		795,000	883,000	786,000	873,000
광주광역시		843,000	937,000	834,000	927,000
여천시		913,000	1,014,000	904,000	1,004,000
여수시		913,000	1,014,000	904,000	1,004,000
순천시		896,000	996,000	887,000	986,000
김천시		777,000	863,000	766,000	851,000
구미시		792,000	880,000	782,000	869,000
칠곡군		905,000	1,006,000	896,000	995,000
대구광역시		854,000	949,000	844,000	938,000
대구광역시(달성군)		819,000	910,000	810,000	900,000
경산시		874,000	971,000	864,000	960,000
경주시		886,000	984,000	877,000	974,000
성주군		863,000	959,000	852,000	947,000
청송군		853,000	948,000	845,000	939,000
울산광역시		877,000	974,000	869,000	965,000
부산광역시(기장군)		1,148,000	1,276,000	1,139,000	1,265,000

행선지	구분	인천터미널기점		김포터미널기점	
		20FT	40FT	20FT	40FT
창원시(마산구)		892,000	991,000	883,000	981,000
창원시		905,000	1,005,000	890,000	989,000
부산광역시		1,206,000	1,340,000	1,196,000	1,329,000
시내		158,000	175,000	166,000	184,000

주) 서울1지역 :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2지역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나. 선사가 서울지역 내륙 컨테이너기지(CD 또는 CY) 설치를 인정하고도 서울지역 CD 및 CY ↔ 부산, 울산, 마산, 광양 CY간 공컨테이너 운송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화주에게 왕복운임을 적용한다.

2. 선사운임

가. EMPTY POSITIONING CHARGE

의왕 ICD ↔ 부산, 울산, 마산, 광양간 선사부담금 공컨테이너 운송 운임은 아래와 같다.

구 분	40FT	20FT
부산기점 ↔ 의왕 ICD	649,000	501,000
신항만(부산)기점 ↔ 의왕 ICD	707,000	546,000
울산기점 ↔ 의왕 ICD	605,000	467,000
마산기점 ↔ 의왕 ICD	594,000	458,000
광양기점 ↔ 의왕 ICD	552,000	426,000
포항기점 ↔ 의왕 ICD	571,000	426,000

나. 셔틀(SHUTTLE) 컨테이너 운임

동일 항내에서 부두-CY간 셔틀(SHUTTLE) 운임은 40FT의 경우 ₩70,000 20FT의 경우 ₩56,000을 적용한다.

다. 환적 컨테이너 운임

동일 항내에서의 환적 컨테이너(T/S CONTAINER) 운임은 40FT의 경우 ₩111,000, 20FT의 경우 ₩103,000을 적용한다.

부 대 조 항

(운임의 적용방법)

- 1) 20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90%를 적용하고, 45FT 컨테이너 운임은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12.5%를 적용한다.
- 2) 20FT 컨테이너 운임의 경우 컨테이너 자체중량을 제외한 내장화물의 중량이 10톤 이하인 경량 컨테이너 2개를 동일장소에서 적재운송(COMBINE 운송)할 경우, 40FT 컨테이너 운임의 108%를 적용한다(단, 냉동컨테이너는 제외한다)
- 3) 도로운송 관련 법규(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통행 제한 높이 또는 길이의 초과로 발생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수수료 등은 별도 가산 적용한다.
- 4) 본 운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의 운임은 최근 거리 상위지역 및 하위지역의 평균운임을 적용한다.

(운임적용의 예외 및 운송 제한)

- 5) 도로통행에 제한을 받는 활대품, 장척물 적재 컨테이너와 TANK 컨테이너 할증운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로 통행 제한규정의 총중량 및 축중량을 초과하는 중량품은 운송을 할 수 없다.

(냉동 컨테이너의 할증)

- 6) 냉동 컨테이너의 운임은 해당지역 요율의 30% 할증율을 가산 적용한다.

(험로 할증)

- 7) 험로 및 통행에 제한을 받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지역 운임에 30% 이상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위험물 할증)

- 8) 위험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수송할 때는 해당지역 운임에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할증율을 가산한다.
(위험물, 유독물 : 50%, 화약류 : 200%, 방사성 물질 : 300%)

(휴일 및 심야 할증)

- 9) 화주의 요청에 따라 공휴일 및 심야에 운행할 때에는 해당지역 운임의 20%를 추가 할증 적용한다.

(트랙터 및 샤프의 사용료)

- 10) 트랙터 대기료는 DOOR 도착후 40FT의 경우 3시간, 20FT의 경우 2시간까지 무료이고 이를 초과시는 매 시간당 40FT 및 20FT 공히 ₩40,000씩 추가 계산한다.
- 11) 샤프(CHASSIS) 임대료는 매일 대당 40FT의 경우 ₩49,000, 20FT의 경우 ₩20,000을 적용한다.

(밥테일 운영)

- 12) 밥테일(BOBTAIL) 운임은 해당지역 운임의 40FT의 경우 43%, 20FT의 경우 45%를 적용한다

(배차 취소료)

- 13) 배차 취소료는 해당지역 운임의 75%를 적용한다.

(기타 사항)

- 14) 본 운임에는 운송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다.
- 15) 본 운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6)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 군은 통합이전의 시, 군 운임을 합한 평균 운임을 적용한다.
- 17) 본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18) 본 부대조항에서 적용되는 모든운임 및 요금은 천원미만을 사사오입하여 적용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컨테이너 운임의 적용시기)

- 19) 본 운임의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